

17世紀 滿洲(淸)와 朝鮮의 關係

Lee Young-chun

(李迎春, 國史編纂委員會 編史研究官)

目次

I. 序說

II. 17世紀 朝鮮後期 滿洲-朝鮮 外交關係의 成立

1. 初期 滿洲-朝鮮 關係와 光海君代의 均衡 外交
2. 仁祖反正 이후의 尊明排金 정책과 丁卯胡亂
3. 丙子胡亂과 質子外交

III. 17世紀 淸-朝鮮 外交關係의 安定

1. 明 滅亡 이후의 정상적인 朝-淸 事大外交
2. 孝宗代의 北伐論과 갈등 관계
3. 顯宗代 이후의 安定的인 對淸外交

IV. 朝鮮後期 對淸關係의 성격

1. 對淸關係의 조건
2. 對淸 事大外交의 性格

V. 結語

I. 序說

1619년 明과 後金[훗날의 淸] 사이에 벌어졌던 薩爾湖 전투의 일부였던 深河 전역에 조선이 출병함으로 시작된 滿洲(後金)와 朝鮮의 관계는 丁卯胡亂과 丙子胡亂을 거쳐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방식이었던 事大外交 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朝鮮과 淸 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은 1637년 三田渡의 항복에 의한 이른바 “丁丑盟約”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그 외교 형식은 조선전기의 朝明關係와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朝貢과 冊封을 근간으로 하는 事大外交였지만, 조선의 영토나 정치적 자주권은 완전히 보장되었다.

외교의 형식면으로 본다면 淸의 皇帝와 朝鮮의 國王 사이에는 天子와 諸侯의 擬制的 封建關係에 있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 조선은 거의 완전한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한중관계는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조선은 1637년 전쟁에서 항복하여 淸에 服屬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조선초기의 對明 관계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었다. 이것이 중국 측 자료에서 조선을 “屬國”으로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屬國”이라는 표현은 조선전기의 明代에도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이 용어가 조선후기 한중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관계의 실제적인 내용이며,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가졌던 조선의 地位에 대한 인식이다. 淸과 朝鮮이 가졌던 이러한 國際關係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朝鮮과 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쟁과 대립의 관계를 평화적인 선린관계로 정상화하게 되었는지,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선행 조건들은 무엇이었는지, 그 후에 어떻게 안정된 外交體制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는지 등의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世紀 朝鮮後期 滿洲-朝鮮 外交關係의 成立

1. 初期 滿洲-朝鮮 關係와 光海君代의 均衡 外交

建州衛의 여진족 酋長 누르하치(努爾哈赤) 세력과 朝鮮이 충돌하게 된 것은 宣祖 초기, 특히 20년(1587)경부터였다. 이 무렵은 누르하치가 건주위 전체를 통일하기 직전이었는데, 함경도와 평안도 북방의 국경 여러 지역에서 여진족의 군소 부족들이 침입하여 소규모의 전투가 일어났다. 이해 賊胡 1백여 기가 雲龍 근처까지 들어와 백성들과 가축을 약탈해 갔다 8월에는 賊胡 1백여 기가 雲龍 근처의 백성들과 가축을 약탈하였고, 9월에는 오랑캐 1,000여기가 惠山鎭을 포위하였다가 僉使 李遐에 의해

격퇴되었다. 다음해 1월에는 녹둔도에 침입한 오랑캐를 추격하여 3백 80級을 베었으나, 2월에는 해산에 침입하여 僉使 李遐가 전사하였다. 또 윤6월에는 南兵使 申砬이 古未浦의 賊胡部落을 소탕하고 20명을 죽였다. 이밖에 사소한 노략질은 매우 많았다.

선조 22년(1589) 7월에는 建州左衛酋長 老乙可赤 형제가 建州衛 추장 李以難 등을 병합하고 스스로 王이라 칭한다는 등의 정보가 滿浦鎭에 귀순해 온 建州衛人 48명으로부터 전해졌고, 평안병사의 書狀에 의해 조정에 보고되어 대비책이 강구되기도 하였다.¹ 이는 대체로 누르하치가 건주 지역을 통일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이었다.

1592년 4월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7월부터 遼陽副總兵 祖承訓 軍 등 明의 원군이 출병하기 시작하였는데, 그해 9월에 누르하치가 요동의 明 관아에 사람을 보내어 朝鮮에 원병을 보내어 倭賊을 섬멸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는 왜적의 建州 지역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으나, 明과 조선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는 1501에 明과 조선이 합세하여 여진족의 영웅이었던 李滿住를 참살하여 피차 怨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내심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1592년 누르하치의 조선 출병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이때부터 그가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595년(선조 28)에 누르하치는 만포에 사람을 보내어 건주 지역에서 잡힌 조선인 14명을 송환해 주고 국서를 보내와 和好를 청하였으나, 조선에서는 明의 法禁을 들어 거절하도록 만포첨사에게 지시하였다.² 그는 1601년에도 만포에 사람을 보내어 朝鮮으로부터 職牒을 받고 싶다는 국서를 보내왔으나, 만포첨사는 그가 明으로부터 이미 龍虎將軍이란 직첩을 받은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³ 이후 상당기간 누르하치는 海西女眞의 정복과 내부 통일 문제에 골몰하여 조선과 별다른 齟齬를 일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압록강·두만강 일대의 여진 부족들을 모두 建州로 징발하여 갔으므로 조선과의 변경에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기도 하였다.

조선이 후금과의 惡緣에 말려들게 된 것은 1618년 후금이 撫順과 清河를 공격하여, 明이 1619년(광해군 11)에 대규모의 원정군을

¹ 『宣祖實錄』 권 23, 22년 7월 정사

² 『宣祖實錄』 권 65, 28년 7월 丙申

³ 『宣祖實錄』 권 142, 34년 10월 丁亥

일으키면서 조선에 후원군을 요청하면서부터였다. 조선에서는 이 문제로 논란이 분분하였으나 壬辰倭亂 때 明의 援軍에 의한 ‘再造之恩’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출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深河 戰役(薩爾湖 전투의 일부)의 出兵이었다. 결국 1619년 2월 22일에 조선은 都元帥 姜弘立, 副元帥 金景瑞 이하 약 13,000여명의 대군을 파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明 總兵官 劉綎의 휘하에 배속되었던 조선군은 3월 4일 寬甸 북쪽의 阿布達里岡에서 일부가 패하고, 富察에서 전군이 투항하였다. 이때 강홍립은 적진에 사람을 보내어 조선이 후금에 아무런 원한도 없고 明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출병하였음을 설명하여 和議에 응하였으므로 전군이禍를 면하게 되었다. 이후 姜弘立 등의 將官은 후금에 억류되었고, 병졸들은 포로로 각지에 분급되었다가 각기 도망하여 왔으나, 생환자는 수천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⁴

조선군의 투항으로 인해 後金은 조선에 당장 큰 원한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조선의 처지는 坐不安席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비록 明의 요구에 응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적대 관계에 있지 않았던 後金의 땅에 침입하여 선제공격을 하였던 것이었으므로 交戰當事國이 되었고,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처지에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失勢한 明의 견제나 後援을 받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0여년간 事大 관계를 유지하였던 明을 疎遠히 하고 후금과 우호관계를 수립하기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光海君은 두 나라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외교를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광해군은 후금에 대해 많은 禮物을 보내는 등 유화책을 견지하고,⁵ 그들을 자극하지 않은 방향으로 실리외교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누르하치도 언제인가 조선을 침공할 생각이 있었던 같기는 하지만, 그의 治世 동안에는 조선과 더 이상 事端을 만들지 않았고, 國書를 왕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名分意識에 젖어 있었던 조정의 신하들은 後金의 국서를 거부하고 對明 義理와 恩惠를 강조하여 혼단의

⁴ 深河 戰役의 투항 상황에 대하여는 『光海君日記』 권 138, 11년 3월 乙未, 戊申, 乙卯日 기사에 두루 수록되어 있다.

⁵ 光海君은 1619년에 後金에 무명 80동(4,000필)을 보내었고, 이듬해에는 滿浦鎭에 온 胡差 등에게 모시·종이·소금 등의 물자를 후하게 실어보내었다.(『光海君日記』 권 143, 11년 12월 丁丑) 또 1621년에는 만포첨사 鄭忠信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 後金의 도성에 사절로 보내었고, 누르하치의 환대를 받았다.(『光海君日記』 권 169, 13년 9월 戊申)

소지를 만들었다. 그들은 光海君의 後金에 대한 유화적인 외교를 반대하여 국왕과 신하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관계가 조성되기도 하였다.⁶

2. 仁祖反正 이후의 尊明排金 정책과 丁卯胡亂

광해군의 對後金 유화정책은 인조반정의 중요한 명분이었다. 그의 廢位 명분은 王大妃[仁穆大妃]의 교서로 반포되었는데, 後金에 대한 유화정책과 균형 외교는 바로 明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되었다.⁷ 이는 물론 王大妃의 생각이라기 보다 仁祖反正 세력 및 당시 조정의 일반적인 감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仁祖는 즉위 직후 明에 대한 事大 의리를 천명하고, 다음달에 李慶全·尹暄 등을 冊封奏請使로 임명하여 海路로 사신을 보내어 明에 자신의 反正을 알리고 冊封을 요청하였다.⁸ 이 요청은 그 해 12월에 수용되었고, 다음해 4월 20일 明의 칙사가 황제의 勅書를 가지고 와서 冊封禮를 거행하였다. 책봉 勅書에는 물론 建州에 공동으로 대항해야 할 義理와 구체적인 군사 협조 방안까지 명시하였다.⁹ 이로써 仁祖 정권의 對滿洲 정책 방향이 결정되었다.

淸太宗은 누르하치 치세 때부터 朝鮮 공략을 주장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1626년 9월 1일 즉위한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은 다음 해(1627년) 정월 13일에 大貝勒 阿敏 등에게 3만의 군사를 주어 朝鮮을 치게 하였다. 그가 내세운 표면적인 침공 명분은 1619년 朝鮮軍이 深河에 출병한 일, 遼島에 주둔한 毛文龍軍을 지원한 일, 조선이 遼東人 피난민들을 받아들인 일, 淸太祖(누르하치)의 喪에 조문하고 太宗의 즉위를 축하하지 않은 일 등 이른바 “四宗惱恨”이었다.¹⁰ “四宗惱恨”은 후금이 明을 칠 때 명분으로 내세운 “七宗惱恨(七大恨)”과 흡사한 宣戰布告의 명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明을 치기 위한 배후 세력의 제거 등 전략적인 목표와 무순 침공 이후 明과의 교역이 단절됨으로 인한 物資難 및 흉년으로 인한 기근 등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朝鮮을 굴복시켜 동맹국으로 삼기

⁶ 이상 光海君代의 對後金 관계에 대하여는 아래 論著 참조.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淸朝交涉과 東亞三國交易을 중심으로-』(혜안, 1999) ·韓明基, <光海君代의 對中國 관계; 後金문제를 둘러싼 對明關係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79(震檀學會, 1995) ·桂勝範,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歷史學報』 193, 2007)

⁷ 『仁祖實錄』 卷 1, 元年 3월 甲辰條 <光海君의 폐위를 밝힌 王大妃의 敎書>

⁸ 『仁祖實錄』 권 1, 1년 4월 병술

⁹ 『仁祖實錄』 권 5, 2년 4월 20일 癸卯

¹⁰ 『仁祖實錄』 권 16, 5년 4월 丁酉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後金은 배후에서 明軍의 공격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정으로는 조선에 오래 주둔할 형편이 아니었다.

정월 13일에 바로 義州가 함락되었고, 그 소식이 전해진 19일에 조정은 곧 王과 世子の 分朝를 결정하고, 강화도로 피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어 21일 陵漢山城이 함락되고, 安州, 平壤이 차례로 함락되자 1월 27일 仁祖는 강화로 피난하였다. 그러나 後金軍은 평양을 함락시키기도 전에 講和를 요구하는 적장 阿敏의 서신을 보내왔다.¹¹ 이를 보면 후금은 조선에서 장기적인 전투를 치르기 보다 신속히 강화를 체결하여 조선을 동맹국으로 만드는데 주된 전쟁 목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조선에서도 1월 25일 답서를 보내어 “四宗惱恨”에 대한 조선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화를 원한다면 빨리 철군하라고 요구하였다.¹² 그리하여 後金軍은 더 이상 서울로 진입하지 않고 黃海道 平山에서 조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¹³

조선도 당시의 형편으로는 조기에 후금을 격퇴할 희망과 자신이 없었으므로 講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3사를 비롯한 斥和派의 집요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仁祖와 대신들은 강화를 추진하였다. 쌍방간에 1달 이상의 논란과 복잡한 협상 과정을 거친 후, 3월 3일 밤 白馬·黑牛의 희생을 차려놓고 仁祖와 대신들 및 후금 將帥들이 함께 서서 會盟 의식을 거행하고 盟約을 다짐하였다.¹⁴ 이 맹약의 주 내용은 양국이 각기 영토를 보장하고 상호 침범하지 않으며, 和親을 어기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¹⁵ 그리고 이 盟文에는 없지만 사전 협의에 의해 두 나라가 “兄弟의義”를 맺고, 朝鮮은 明과 외교를 유지하지만 明年號는 쓰지 않으며, 淸과 국교를 맺어 明과 淸을 똑같이 대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講和의 성립과 동시에 後金軍은 철수하기로 하였다.¹⁶ 또한 전란 때 무수히 잡힌 조선인

¹¹ 『仁祖實錄』 권 15, 5년 1월 22일 庚寅

¹² 『仁祖實錄』 권 15, 5년 정월 丙戌, 庚寅

¹³ 丁卯胡亂과 講和 과정에 대하여는 金鍾圓의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朝淸交涉과 東亞三國交易을 중심으로-』(혜안, 1999)와 <丁卯胡亂時의 後金의 出兵動機-後金의 社會發展過程에서의 社會經濟的 諸問題와 관련하여-> 『동양사학연구』 12·3합집(동양사학회, 1978) 참조.

¹⁴ 『仁祖實錄』 구js 15, 5년 2월 丁卯, 3월 戊辰

¹⁵ 『仁祖實錄』 권15, 5년 3월 3일 庚午.

¹⁶ 『仁祖實錄』 권 15, 5년 2월 戊申, 己酉, 壬子

ᄇᆞᆫᄇᆞᆫ과 요동의 漢人들 및 瓦爾喀(兀良哈)人들이 조선 지역으로 도망 올 경우에는 이들을 모두 후금으로 환송하기로 하였다.

이때 歲幣 문제는 명확히 거론되지 못하였으나, 후금은 明에 대한 年貢과 똑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조선은 歲幣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히 감안하여 형편대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때 애매하게 처리하였던 歲幣 문제는 후에 두고두고 갈등을 일으켰고, 끝내는 丙子胡亂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同床異夢과 같은 세폐 數目은 여러 해 갈등을 1633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여기에는 각색 綿布 7,000필(연14,000필)이 과중하게 포함되었는데, 이는 당시 後金이 明과의 교역 증지로 인해 매우 수요가 많았던 것이었다. 이렇게 정한 세폐도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⁷ 이는 결국 다른 문제들과 함께 겹쳐 1636년의 丙子胡亂을 유발하게 되었다.

3. 丙子胡亂과 質子外交

1627년 丁卯胡亂이 있은 후 10여 년이 지나는 사이에 조선과 후금 두 나라 사이에는 많은 곡절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ᄇᆞᆫᄇᆞᆫ에 진을 치고 있었던 毛文龍軍 지원 문제, 도망 온 조선인 ᄇᆞᆫᄇᆞᆫ들의 환송 문제 그리고 歲幣와 貿易 문제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비난하였던 盟約 파기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병자호란의 배경이 되었다. 조선은 약속한 歲幣를 소홀히 한 점이 있었고, 後金은 毛文龍軍을 치기 위하여 약속을 무시하고 鴨綠江을 건너 침범하기도 하였다.

淸太宗은 그 동안 여러 차례 蒙古를 정벌하여 1635년에 몽고 諸部の 宗主國이었던 察哈爾를 평정하고 大元傳國의 玉璽를 얻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익년 4월 11일에 滿洲와 몽고 여러 부족의 추대를 받는 형식으로 皇帝位에 올라 “寬溫仁聖皇帝”라는 尊號를 받고 國號를 大清으로 하고 天聰 年號를 崇德으로 고쳤다. 그 전 2월에 만주와 몽고의 貝勒(族長) 대표들은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仁烈王后의 靈前에 致祭하고 청태종의 황제 추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척화파가 정국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패륜적이라고 성토했고 거부하였다. 또 당시 심양에 있었던 조선 사신들은 황제의 추대식에 억지로 참석하였다가

¹⁷ 『仁祖實錄』 권 33, 14년 11월 을묘 “完城君 崔鳴吉이 차자를 올리기를, (중략) 근래에 오랑캐는 분디 별다른 뜻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스스로 도리를 잃은 것이 많습니다. 春信使의 歲幣 中 準納하지 못한 숫자를 아직도 수송하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의 信義가 도리어 오랑캐만도 못한 것입니다.”

滿人들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내 절을 하지 않았다. 이에 淸의 君臣들은 격앙하여 宣戰論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그 해 12월 2일에 압록강을 넘어 淸軍의 침공이 시작되었다. 11일 적군의 침입 소식이 서울에 전해지고 3일 만인 14일에 갑자기 청나라 병사들이 서울에 들어 닥쳤다. 그 전날 종묘의 神主, 世子嬪과 鳳林大君 등의 왕족들과 신하들의 가족은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나, 임금과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난할 시간을 놓치고 14일 밤 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적군이 산성을 포위하여 내외의 통신이 끊어지자 왕과 신하들은 고립되고 말았다. 여기서 47일간의 항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항전은 치열하였으나 비축한 식량이 고갈되고 軍士들이 동요하게 되고, 다음해 1월 26일 江都의 함락 소식을 듣자 마침내 항복을 결정하게 되었다.

1월 30일 인조는 三田渡에 나와 淸 太宗에게 3拜 9叩頭의 예를 올리고 항복하였다. 항복의 조건은 1월 28일 양국의 강화 대표들에 의해 확정되어 통지되었다. 이것은 청 태종이 자비롭게도 지난날 朝鮮이 “지는 죄를 모두 용서하고 規例를 상세하게 정하여 君臣이 대대로 지킬 信義로 삼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¹⁸

1. 明의 誥命·冊印는 (淸에) 납부하고, 明에 使臣 왕래를 근절하며, 明의 年號를 사용하지 않는다.
2. 世子와 王子 1인 및 대신들의 子弟를 質子로 대동한다.
3. (淸의) 征明時 군사를 징발하여 지원하고, 關島 정벌에 병선 50척과 군량을 지원한다.
4. 聖節·正朝·冬至 및 慶弔事의 예물과, 表文은 대신 및 內臣이 봉헌하며, 表文·箋文 등의 정식 및 詔勅·傳諭 때의 謁見 迎送 예절은 明의 예에 의한다.
5. 軍中에 關虜 중 압록강을 건너 도망 온 자는 送還하고, 贖還할 경우에는 (淸) 本主의 편의대로 한다.
6. 內外 諸臣은 婚姻으로 和好를 굳힌다.
7. 新舊 城垣의 改築을 금지한다.
8. 조선에 사는 오랑캐(兀良哈) 人들은 모두 찾아 (淸에) 돌려보낸다.

¹⁸ 『仁祖實錄』 권 34, 15년 1월 28일 戊辰

9.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허용하되, 그 사신을 심양에 인도하여 年貢을 정한다.

이것은 흔히 丁丑盟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일방적으로 통고된 항복 조건이었다. 이는 丁卯胡亂 때와 같이 祭壇에 희생을 바치고 서로 마주하여 鬻血하고 天神地祇에 고하는 盟約文은 아니었다. 1월 30일의 항복식도 인조가 淸 太宗에게 절하고 服從을 다짐하는 항복 의식이었을 뿐 평등한 당사자들끼리의 會盟 의식은 아니었다. 이것은 淸 太宗이 말한 바 “이제 두 나라가 한 집안이 되었다”는 服屬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을 뿐이다.¹⁹

위의 항복 조건들은 모두가 朝鮮에게 가혹한 것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참했던 것은 世子와 王子 1인 및 大臣들의 子弟를 質子로 잡아간 것이었다. 우리의 外交史에서 유례가 없었던 이 質子는 淸이 朝鮮의 복종을 물리적으로 강제한 것으로 오랜 尊明排淸 정책으로 인해 자초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후 昭顯世子 일행은 1645년까지 8년간 심양에서 인질로 잡혀 있었다. 소현세자는 장기간 심양에 거주하면서 淸의 사정을 본국에 전달하고,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며, 현안 문제를 조절하는 등 외교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때로는 淸의 지나친 요구를 본국 조정에게 전달하여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가 거처하는 藩館은 朝鮮政府의 代表部 역할을 하게 되었다.²⁰ 1637년부터 1645년까지 瀋陽에 억류되어 있었던 소현세자는 일정한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質子로서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다른 요인들도 있기는 하였지만, 이 質子 때문에 조선은 꼼짝할 수 없이 淸에 예속되어 반항을 포기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양국의 지배-복종 관계를 質子로 묶어두는 방식은 쌍방의 신뢰가 받침 되지 않는 매우 원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외교 방법이었다. 이것은 淸이 物理力으로 복종케 한 것이고 성심에서 우러난 事大를 할 수 없게 한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며, 두 나라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淸朝가 지양해야 할 것이었다. 이는 결국 1644년 明이 멸망한 후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다.

¹⁹ 『仁祖實錄』 권 34, 15년 1월 30일 庚午 “汗使龍骨大, 告我諸侍臣曰: “今則兩國爲一家矣.”

²⁰ 藩館에서 昭顯世자의 활동과 기능에 대하여는 金龍德, <昭顯世子研究>史學研究 18(韓國史學會, 1964) 및 崔韶子, <淸廷에서의 昭顯世子 (1637~1645)> (『全海宗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一潮閣, 1979) 참조.

III. 世紀 淸-朝鮮 外交關係의 安定

조선후기 對後金·對淸關係가 시작되어 전쟁으로 격화되고 수습되어 安定되기까지는 몇 단계의 고비를 겪어야 했다. 그것을 대체로 정리해보면 (1) 광해군대의 深河戰役 참전과 균형 외교, (2) 仁祖反正 이후의 尊明排金 정책과 丁卯胡亂, (3) 병자호란과 質子外交, (4) 明 滅亡 이후의 정상적인 事大外交, (5) 효종대의 北伐論과 軋轢 관계, (6) 현종대 이후 對淸外交의 안정으로 정착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이후 250여년간 지속되었으며, 그 성격에 대한 해석에 논의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든 1894년 淸日戰爭에서 淸의 패배로 인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對淸外交가 정착되기까지에는 청과 조선 사이에 허다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였다. 그것은 두 나라가 전통적인 조공외교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들자면 양국 사이에 있었던 明의 존재, 世子와 大君의 인질 문제, 조선인 倭虜들의 도망과 贖還, 淸의 軍士·軍需物資 징발,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歲幣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1644년 明의 멸망 이후에 차차로 해결되어 갔다. 이제 對淸 외교가 정상화하기까지의 과정을 대략 정리해 본다.

1. 明 滅亡 이후의 정상적인 朝淸 事大外交

仁祖는 1636년 南漢山城에서 공전의 위기를 겪고 三田渡에서 오랑캐에 항복한 수치를 겪은 후에는 완전히 自尊과 저항 의식을 버리고 主和派 관료들을 등용하여 親淸의인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전도 항복 이후 인조는 두 번 다시 復讐雪恥를 거론하지 말라고 신하들에게 明言하였다. 世子·大君·大臣子弟들이 인질로 잡혀간 터이므로 두말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仁祖는 아직도 尊明 의식을 가지고 있던 신하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²¹

1644년의 明 멸망은 조선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고 對淸關係를 정상화하는데도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조선의 朝野에서는 비록 丙子胡亂으로 인해 청으로부터 事大外交를 강제받고 있었지만, 언제인가 明이 위세를 회복하여 淸을 축출함으로써 大明 사대관계가 복원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암암리에 明과 비공식적인 연락체계를

²¹ 丙子胡亂 이후 인조의 정책에 대하여는 한명기, <丙子胡亂 패전의 정치적 파장 -청의 조선 압박과 仁祖의 대응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19(延世大 國學研究院, 2003) 참조.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1644년 淸이 中原의 주인이 됨으로써 이러한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645년 1월까지 중국의 대부분을 평정한 淸은 대외관계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조선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게 하였다. 1644년 4월 淸의 入關 전투에 종군하였고, 9월에는 북경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그 해 12월에 영구적으로 歸國을 허가받았다. 그는 1645년(인조 23) 2월 18일 서울에 귀환하였으나, 4월 26일에 急逝하였다. 함께 質子로 있었던 鳳林大君은 6월에 귀국하여 9월에 세자로 책봉되었다.²² 이로써 淸과 조선 사이에 가시와 같았던 質子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모든 것은 평상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아울러 이해에 歲幣가 대폭 감축됨으로서 조선은 큰 짐을 덜게 되었다. 이때부터 두 나라 사이에는 물리적 강제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事大外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는 仁祖의 親淸의인 외교정책과 어울려 정상적인 對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1619년 조선의 瀋河戰役의 출병에 의해 긴장되고 두 차례의 胡亂으로 인해 격화되었던 전시 상황은 끝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형식면에서 조선전기 對明 事大外交 체제 즉 朝貢-冊封 체제가 완전히 복원되어 작동하게 된 것을 뜻하기도 한다.

2. 孝宗代의 北伐論과 갈등 관계

孝宗代(1649~1659)의 北伐論은 인조대 후반기의 親淸 정책에 대한 朝野의 반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孝宗 자신의 의지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만연하였던 復讐雪恥 정신을 거부할 수 없었던 시대적 추세 때문이기도 하였다. 入關 이후 극도로 고조되고 확장되어 있었던 淸의 武力을 상대로 北伐을 감행한다는 것은 있을법하지 않았지만, 1637년 이후 피폐되었던 軍備를 최소한으로나마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 효종의 생각이었다. 그것은 당시 조선이 국가로서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기초적인 과제였다.

효종 연간은 병자호란으로 인한 대내외적 위기와 혼란이 점차 수습되어 안정되어 감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다각적으로 모색코자 했던 시기였다. 효종은 즉위하자 곧 金集·宋時烈 등 山林 세력을 등용하여 조정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비를 정비하는 등 中興의 기운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山林 세력에 의해 탄핵을 받게된 金自點·申晷 일파는 위기를

²² 『仁祖實錄』 卷 46, 23年 5月 乙未

느껴 역관 李馨長 등을 통해 淸에 조선의 군비 증강과 반청 세력의 등장을 밀고하고, 山林 일파를 잡아가도록 공작하였다.²³ 이 때문에 淸에서 조선의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勅使가 3차례나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 과정에서 金自點 일파는 다음해 모반죄로 일망타진되었다. 그 후에도 조선은 倭人の 침략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城池를 보수하고 火藥을 제조하는 등 군비를 증강해 나가게 되었다. 反淸活動으로 인식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때때로 淸에게 탐지되어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651년(효종 2) 청에서 고압적인 攝政王(九王 Dorgon)이 죽고 김자점 일파가 숙청되자 조선은 어느 정도 청의 감시에서 벗어나 內政에 충실할 수 있었다. 효종시대의 대동법 확대 실시와 군비증강은 이 시대의 자활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비확장은 丁丑 항복에서 금지된 것이어서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었으나, 효종은 즉위 3년(1652)부터 꾸준히 군액증가, 성곽보수, 무기정비, 훈련강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군비증강은 이른바 ‘北伐’을 감행하기에는 태부족이었지만, 그 결과로 1654년과 1658년 두 차례의 羅禪征伐에서 실력을 과시하기도 하였고 왕권의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자주 淸에 포착되어 査問을 받는 등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때마다 조선에서는 인평대군 등의 왕족이나 議政 급의 고위 외교관을 파견하여 변명과 무마에 진력하였다.²⁵ 이때 조선 측에서 주로 내세운 핑계는 倭賊의 침입에 대비한다는 것이었다. 淸에서도 이러한 조선의 의도와 내막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여러 차례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²⁶

²³ 『孝宗實錄』 권 7, 2년 12월 己未

²⁴ 車文燮 「朝鮮朝 孝宗의 軍備擴充(下)」(『檀國大 論文集』 2, 1968) p. 52. 孝宗의 軍備增強이 北伐보다는 오히려 王權의 強化와 關聯이 깊다는 주장은, 孝宗이 한 때 慶福宮의 재건과 五廟制의 시행을 의도하였다는 사실을 연상시킨다. 尤菴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先生曰 孝廟若天假聖壽數年 則更建慶福宮也 得遂聖志而功成治定 又當立五廟昭穆之制也”(『宋子大全 附錄』 卷 18, 22a 語錄)

²⁵ 『孝宗實錄』 권 3, 1년 3월 갑인

²⁶ 『孝宗實錄』 권 5, 원년 8월 무신 “저 사람들이 매양 말하기를 ‘倭使가 왕래할 때 양식과 찬거리만을 주고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했는데, 그대 나라는 길췌하면 왜를 핑계로 우리를 공갈하고 있으니,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九王이 말하기를 ‘先汗 때부터 본국에 은혜를 베푼 것이 매우 두터웠고, 나도 국왕에게 사사로이 베푼 은혜가 있다. 그런데 매번 倭賊과 혼단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城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겠다고 청하니, 이는 필시 그대 나라가 상하간에 모두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또다시 군비증강을 추진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정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이와 같이 효종시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력회복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이 때때로 反淸運動으로 간주되어 淸과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결정적인 파국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당시 조선 정부의 적절한 외교 정책으로 가능했던 것이었고, 또한 麟坪大君과 같은 유능한 외교관들이 그 사이에서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종대의 북벌론과 군비 증강은 淸에 대한 조선의 반발을 보여준 마지막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자존의식이 발로된 사회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顯宗代 이후의 안정적인 對淸外交

현종대 이후에는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復讐雪恥를 말하거나 淸을 대상으로 하는 軍備 확충을 논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1662년(현종 3)에 明 최후의 부흥운동을 벌였던 황족 桂王(연호 永曆)이 미얀마로 축출되어 죽음으로써 明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 동안 조선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歲幣는 孝宗代에 대다수가 감액되었다. 또 청에 잡혀갔던 조선인 虜들의 도망도 어느 정도 종식되었으므로 현종대에는 對淸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정리되었다.

다만 1673년(현종 14년) 11월에 중국 남부지방에서 ‘삼번(三藩)의 난’(1673~1691)이 일어나자, 그 해 12월 南人の 중심인물이었던 尹○가 잠시 北伐論을 주창하였다. 그는 지방의 유생들을 선동하는 한편 비밀상소를 올려 복수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영의정 許積 등이 시세의 형편을 들어 반대함으로서 무시되고 말았다.²⁷ 그러나 그는 계속 吳三桂軍과의 通文을 제의하고 또 體察府의 설치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일어난 이 내란은 북벌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으나, 당시 조선 조정은 이미 對淸外交에 깊이 빠져 慣性化 하였으므로 이러한 북벌론이 거론될 수 없었다 하겠다.

조선후기 내내 팽배하였던 재야 지식인들의 반청 감정에도 불구하고, 北伐論이나 對淸 저항 운동은 1659년 5월 효종의 薨逝 이후에 완전히 잠적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종대 이후에는 평화롭고 우호적인 대청외교의

²⁷ 掌令尹○上疏 投進密封冊子 陳復讐雪恥之義(中略) 許積曰其義則 君臣上下所不可忘者 而但卽今事力 有不可及 只當存諸心而已(『肅宗實錄』 卷1, 卽位年 12月 庚寅).

慣行이 일정한 체제를 갖추어 굳어지게 되었다.²⁸ 이것은 기본적으로 1637년 체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1644년 이후의 국제 환경과 효종대의 反動을 거쳐 현종대에 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후 200여년간 변함 없이 유지 준행되었고, 어떠한 심각한 문제도 야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조선후기의 안정적인 對淸關係에 기초가 되었다.

IV. 朝鮮後期 淸-朝鮮 外交關係의 性格

1. 外交關係의 조건

이 민족 사이에 전쟁으로 시작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음으로써 극히 험난하였던 淸과 朝鮮의 관계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의 난관들이 가로 놓여 있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하였다.

첫째는 초기 양국의 관계에서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던 明의 존재와 그에 대한 조선의 정책 및 흥미심이었다. 1637년 항복 이후에도 明과 조선 사이에는 암묵적인 사람들의 왕래와 明軍·明人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이것은 1644년까지 對淸關係에서 자주 현안이 되었다. 그러나 1644년에 明 멸망하고 淸이 入關하여 中原을 지배함으로써 저절로 해결되었다. 이후에도 조선의 朝野에는 尊明排淸 의식이 남아 있었고, 때때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대청 외교에 결정적인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둘째는 1637년 이후 심양에 잡혀갔던 世子와 大君 및 大臣 子弟들의 인질 문제였는데, 이 역시 1644년 청의 入關 이후 그들이 送還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는 明의 멸망으로 인하여 더 이상 後患이 없을 것이라는 청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양국 사이에는 人質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 없이 진정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셋째는 丁卯·丙子胡亂 때 잡혀간 조선인 虜들의 贖還과 도망해 오는 그들의 환송 문제였다. 虜들의 속환은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도망 虜들도 소수를 압송함으로써 진정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40여년이 지난 顯宗代까지도 계속 현안 문제가 되었으나, 肅宗代에 이르면 조선인 虜들도 현지생활에 정착 안주하게 되어 거의 도망해 오는 일이 없게 되었다.

²⁸ 조선후기의 표준적인 對淸·對日本 외교 체제는 1720년에 간행된 『通文館志』에 잘 수록되어 있다.

넷째 조선은 1637년 이후 1644년까지 청의 軍士·軍糧·兵船 징발로 고통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조선은 대체로 5,000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군수품을 지원하였다. 또 1639년(인조 17)에는 극동 熊島의 慶河昌을 토벌하기 위하여 北虞侯 劉纘先 외 포수 400, 사수 100, 선박 112척을 서수라에서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효종대에 두 차례의 나선정벌로 각각 150명, 250명 단위의 군사를 파견하였다. 청의 조선군 징발은 이것으로 끝나고 다시는 문제화하지 않았다.

다섯째, 1637년 항복 때 책정된 과도한 歲幣의 감액 문제였다. 여기에는 황금 100냥, 은 1000냥, 綿紬 2,000필, 木棉 10,000필, 米穀 10,000포 등 과도한 액수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冬至·正朝·聖節 삼절의 方物과 함께 전후 조선에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米穀은 3년후인 1640년에 9,000포가 감액되고, 1647년에 다시 900포가 감액되었다가 결국에는 찹쌀 40포로 정착되었다. 목면과 명주도 이러한 추세로 감액되고, 금과 은의 연공도 숙종대에 폐지되었다.(〈표 2〉 참조) 그래서 丁丑 항복 때의 과도한 歲幣는 현종대까지 대부분 감액되어 이후에는 事大의 상징적인 의례로만 남게 되었다. 이로써 朝淸關係를 막고 있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었고, 정상적인 외교 체제가 정비되어 작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1637년 조선이 청의 항복 요구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남한산성에서 出城하자, 對淸外交는 단절되고 對淸 事大外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형식이나 내용도 한결같이 前例를 준수하게 되었고 조선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仁祖反正 이후 尊淸排淸 정책을 취하였다가 戰禍와 亡國의 위기를 겪은 후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排淸을 거론하는 일이 없었다. 이후 조선은 淸에 대하여 순종하고 적대적인 한 적이 없었지만, 청은 한동안 의심과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1644년 명이 멸망한 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世子·大君의 방송과 함께 조선은 비로소 속박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2. 對淸 事大外交의 性格

17세기 초에 시작되었던 朝淸關係는 2차례의 戰爭을 포함하여 여러 번 험난한 고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영토나 內政은 의외로 간섭을 받지 않았고, 현안 문제가 된 적도 없었다. 이는 朝鮮이 고도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자신의 領域과 自主權을 확고히 보장받은 것이었다.

이는 또한 인접국과의 평화를 통해 天下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淸朝의 외교정책에도 기인한 것이었다. 형식적인 宗主-從屬 관계 속에서 거의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조선후기 朝淸關係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644년 이후 東亞世界の 지배자가 된 淸朝의 황제는 중국 역대 정통왕조의 전통에 따라 천하의 주인으로 자처하였고, 비록 滿洲族이 최상위 지배층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정복한 漢族 인민이나 인접국 사람들도 똑같은 "赤子"로 대우한다는 "一視天下"의 관용 정신을 표방하였다. 이 때문에 淸朝의 權威에 도전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한 주변국들을 침범하지 않게 되었고, 朝鮮도 위협을 받거나 간섭을 받지 않았다.

1637년 三田渡 항복 이후의 조청관계는 그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전쟁으로 정복되고 병합된 宗主-隸屬國의 관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자발적으로 擬制的 宗屬 관계에 들어갔던 조선과 明의 관계와는 매우 달랐다. 전자는 武力에 의해 강요된 事大 관계였고, 후자는 自願에 의해 전략적으로 채택한 事大 관계였다. 이를 고려후기의 麗元 관계와 비교해 본다면, 고려는 오랜 항전 끝에 협상으로 종전하였고, 국왕들이 여러 대에 걸쳐 元 황실의 駙馬가 되어 일종의 황실 친족체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부마국의 처지에 있었다. 이를 보면 朝淸 관계가 麗元 관계보다 더 심각한 君臣關係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637년 조선과 淸의 기본적인 지위를 확정한 이른바 “丁丑盟約”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盟約이 아니라, 사실상 條件附降服의 “降服條件”이라고 할 수 있으며, 淸 太宗이 일방적으로 통고하였던 그 문서는 “丁丑降服規例”(약칭 “丁丑規例”)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그것은 淸과 朝鮮 사이에서 “君臣이 대대로 지킬 信義”의 규례였던 것이다.²⁹ 이렇게 조청관계가 전쟁으로 정복되어 병합된 宗主-屬國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국내 통치는 완전한 自治에 맡겨졌다. 일반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王位繼承者의 선정과 같은 것에도 청이 간섭하는 일은 없었고, “冊封”이라는 사후 추인의 절차만이 있었다. 다만 조선의 軍備 증강이나 군사활동은 淸이 민감하게 감시하면서, 적대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淸 지배하의 自治國 지위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²⁹ 『仁祖實錄』 권 34, 15년 1월 28일 무진 “今盡釋前罪, 詳定規例, 以爲君臣世守之信義也.”

비록 屬國이었다고 하더라도 조선 고유의 영토는 완전히 보장되었고,³⁰ 淸의 편의에 따라 침해받거나 사용되는 일도 없었다. 국경선은 엄격히 준수되었고, 상호간의 허가 없는 무단 越境은 금지되었다. 압록강 두만강의 북쪽 淸의 국경지대에는 空曠地帶가 설정되어 상호간의 충돌이나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되었다. 朝淸 양국의 현안 문제는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였고, 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었다.

특히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압록강-백두산-두만강 경계가 확실히 지켜져 상호 침범하는 일이 없었고, 압록강·두만강 이북에는 양국 국민이 충돌하지 않도록 북쪽(청 지역)으로 약 40-50km의 거리를 두고 空閑地 혹은 완충지대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는 淸에서 漢人 등이 백두산 쪽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지만, 이 완충지대의 운영에는 조선 쪽에서도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1715년(숙종 41년)에 安都의 벌채꾼들과 영고탑 官兵들이 두만강 對岸에 屯을 치고 집과 막사를 건설하자, 조선에서는 이를 황제에게 보고하여 후방으로 철수토록 하였고, 淸은 이를 수용하여 이후에는 淸인들이 두만강 근처에서 집을 짓거나 농사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였다.³¹

1731년(雍正 10, 영조 7)에는 청의 瀋陽將軍 등에 의하여 압록강 건너편 淸 지역 草河와 圖河가 만나는 어귀에 莽牛哨 防圖을 설치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조선의 끈질긴 반대로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다.³² 또 1746년(乾隆 11년, 영조 22)에 奉天將軍 達爾黨阿가 다시 莽牛哨에 관병을 파견하고 屯田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淸의 兵部에서 이 일을 추진하였으나, 조선 정부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여 중지시켰고, 아울러 柵門을 압록강 쪽으로 전진하여 설치하려던 공사도 중지시켰다.³³ 따라서 이 공한지나 압록강의 관리에 대하여는 조선 측에서도 일정한 발언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은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淸도 조선의 영토와 자주권을 존중하였다.

³⁰ 이는 丁卯胡亂 때의 盟約에서 보장되고 丁丑規例에서 재확인된 것이었다.(『仁祖實錄』 권15, 5년 3월 3일 경오)

³¹ 『通文館志』 권 9, 「紀年」, 肅宗 41년(1715년)

³² 『通文館志』 권 10, 「紀年續編」 영조 7년(1731) 및 『同文彙考』 原篇 권 48, 16a-19a 疆界 <禮部知會詢問設圖便否上諭咨> <請寢莽牛哨設圖咨> <禮部知會不設防圖上諭咨>

³³ 『通文館志』 권 10, 「紀年續編」 영조 22년(1746) 및 『同文彙考』 原篇 권 48, 19b-34b 疆界 <禮部知會莽牛哨添駐官兵防守咨> <請寢添兵屯田奏> <禮部知會奉旨寢退柵添訊咨>

中韓 관계의 오랜 관례에 따라 淸에 바치는 朝貢은 年貢(歲幣)과 禮物(方物) 모두 토산물 중심의 儀禮的인 것이며, 租稅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1637년에 처음 정한 歲幣數目에는 쌀과 金銀 등의 화폐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곧 감면되고 모시·명주·화문석·모피·종이 등이 禮物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는 중국 각 省에서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租稅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황제가 주는 回賜品도 물론 의례적인 것이었다. 이는 朝淸 事大 관계가 儀禮를 중시하는 외교 형식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과 淸은 세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청은 대체로 조선 국왕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전쟁 유발 책임을 포함하여 청은 모든 것을 조선의 신하들이 誤導한 것으로 책망하였고 국왕을 연루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淸의 상투적이고 고차원적인 외교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국왕들도 개별 事案의 책임을 모두 신하들에게 전가하였다.³⁴ 이러한 외교 방식이 두 나라의 관계를 결정적인 파국으로 몰지 않은 基底가 되었다.

청의 조선에 대한 온건하고 관용적인 정책은 초기에는 조선과 明의 접근이나 유대를 끊기 위한 기술적인 정책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곧 청의 대조선 외교에서 일관된 방침이 되었다. 여기에는 明代와는 달리 淸朝의 만주족이 같은 夷民族으로서 韓民族을 대하는 同類意識과³⁵ 문화적 선진성에 대한 선망 및 존중의 관념이 일부 깔려 있었던 때문이기도 하였다.³⁶ 이에 대해 조선도 최대한으로 공손한 형식을 다하였지만, 조선의 君臣들은 한번도 진정으로 淸에 감사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犬猿之間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長久한 평화관계는 양국의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매우 효율적이고 훌륭하게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³⁴ 『淸太宗日錄』 권 33, 崇德 2년, 正月 丁巳 “至敗盟一事, 小邦例有臺諫諸官, 職分論爭, 向日所爲, 誠極謬妄, 使小邦生民塗炭至此, 無非此輩之罪”

³⁵ 滿洲族과 한족의 관계에 대해서는 元代에 편찬된 『金史』 「始祖」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金 太祖 阿骨打의 7대조인 시조 函普가 60여세에 고려로부터 와서 흑수말갈의 일 부족인 완안부에 와서 부족 내의 해묵은 원한과 갈등을 해결해 주고 60세의 미혼녀와 결혼하여 2남1녀를 낳았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또 “여진과 발해가 본래 일가이다” 고 하였다.(『金史』 권1, 本紀1, <始祖>)

³⁶ 이점에 대하여는 누르하치가 조선 差官 鄭忠信에게 한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後日, 曾使人問曰: 朝鮮卽大國, 辱遣差官遠問, 且有所贈厚禮, 不敢當. 吾亦欲送差人, 偕至京城, 以謝朝廷, 差官能帶去否?”(『光海君日記』 권 169, 13년, 9월 10일 戊申)

丙子胡亂에서 항복함으로 형식적 從屬關係로 이루어졌던 朝淸 관계도 겉으로 보자면 결국 조선전기의 朝明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國防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해진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외교는 정통 中原國家와의 전통적인 事大外交의 형식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항상 丙子胡亂과 같은 무력적 징벌의 가능성으로 인해 조선이 세심하게 주의하여 관리해나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은 비용이 들지 않는 외교적 言辭를 다하여 淸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평화체제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였다.

V. 結語

조선후기 淸-朝鮮 外交關係가 安定되기까지는 光海君代의 深河戰役 참전과 균형 외교, 인조의 尊明排金 정책, 丁卯胡亂과 兄弟同盟 관계, 丙子胡亂과 質子外交, 明亡 이후의 事大體制, 孝宗代의 北伐論과 양국의 軋轢, 顯宗代 이후의 正常關係로 역사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事大朝貢 體制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는 1894년에 가서야 淸日戰爭으로 끝나게 된다.

淸과 조선의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해결되어야 하였다. 첫째는 조선이 흠모하고 있던 明의 존재였다. 이는 1644년에 明 멸망하고 淸이 入關하여 中原을 지배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둘째는 1637년 이후 심양에 잡혀갔던 世子와 大君, 大臣子弟들의 인질 문제였는데, 역시 1644년 청의 入關 이후에 그들이 送還됨으로서 해결되었다. 셋째는 병자호란 때 잡혀갔던 조선인 僞虜들의 贖還과 도망해 오는 그들 走回人의 還送 문제였다. 僞虜들의 속환은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도망 僞虜들도 소수를 압송함으로써 진정될 수 있었다. 넷째는 조선은 1637년 이후 1644년까지 청의 軍士·軍糧·兵船 징발로 고통 받았으나, 효종대의 두 차례 나선정벌 이후에는 淸이 다시 징병을 요구한 일이 없었고 문제화하지도 않았다. 다섯째는 1637년 항복 때 책정된 과도한 歲幣 문제가 있었으나, 1640년 이후 현종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분 감액되고, 이후에는 事大의 상징적인 의례로만 남게 되었다.

조선후기의 조청관계는 비록 戰爭으로 시작되었지만, 1637년 항복 이후 새로운 外交體制가 성립함으로써 조선의 영토나 內政은 조금도 간섭을 받지 않았고 自主權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양국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며, 이로 인해 250여년 간의 평화체제가 유지되었다. 1644년 이후 동아시아의 지배자가 된 淸朝는 자신들의 權威에 도전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한 朝鮮을 공격·위협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 특히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압록강-백두산-두만강 경계가 확실히 지켜져 상호 침범하는 일이 없었고, 압록강·두만강 이북에는 양국 국민이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북쪽(청 지역)으로 약 40-50km 거리의 공한지 혹은 완충지대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는 상호간의 충돌이나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완충지대에 淸의 軍事·住居 시설 등을 할 경우에는 조선이 강력하게 異議를 제기하여 출수하도록 하였다. 朝淸 양국의 현안 문제는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였고, 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었다.

초기 양국의 사이에는 상당한 곡절이 있었지만, 淸은 한번도 朝鮮 國王의 직접 책임을 묻지 않았다. 淸은 모든 것을 조선의 신하들이 誤導한 것으로 책망하였고 국왕을 연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淸의 외교술이 두 나라의 관계를 결정적 과국으로 몰지 않은 基底가 되었다. 청의 조선에 대한 온건하고 관용적인 정책은 대조선 외교에서 일관된 방침이 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도 최대한 공손한 형식을 다하였지만, 조선의 君臣들은 진정으로 淸에 감사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犬猿之間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長久한 평화관계는 양국의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매우 효율적이고 훌륭하게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1637년 三田渡 항복 이후의 朝淸關係는 전쟁에서 항복하여 병합된 宗主-屬國의 관계였다. 이는 조선초기에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던 明과의 擬制的인 宗屬關係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비록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하였지만, 전자는 무력에 의해 강요된 事大였고, 후자는 자발적이고 自願에 의해 이루어졌던 事大였다.

朝淸關係가 전쟁에서 항복하여 병합된 宗主-屬國의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국내 통치는 완전한 자치에 맡겨졌다. 일반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王位繼承者의 선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도 淸이 간섭하는 일은 없었고, “冊封”이라는 사후 추인의 절차만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은 淸 지배하의 완전한 自治國 지위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